

‘지역발전 이끌 일꾼을 찾습니다’

후보자 사진

이름(나이, 소속 정당) 직업

선거구별 정당 기호(교육감 무소속은 가나다순)으로 게재
정당 기호 - 민: 더불어민주당
국: 국민의힘
정: 정의당
무: 무소속
소속 정당별 색은 당 색에 따라
■ - 더불어민주당
■ - 국민의힘
■ - 정의당
■ - 무소속

***교육감 후보는 로 통일**

전북도지사



김관영(52, 민) 전 국회의원
조배숙(65, 국) 전 국회의원

전북도교육감



김윤태(58) 우석대학교 교수
서거석(67) 전 전북대학교 총장
천호성(55) 전주교육대 교수

전주시장



우범기(68, 민) 전 전북도 청무부지사
김경민(67, 국) 전 인수위 지문위원
서윤근(51, 정) 전주시의원

군산시장



강임준(66, 민) 군산시장
이근열(48, 국) 전 당협 운영위원장
나기학(60, 무) 전 전북도의원

익산시장



정헌을(64, 민) 익산시장
임석삼(65, 국) (유)이람 대표
박경철(66, 무) 전 익산시장
임형택(48, 무) 익산시의원

정읍시장



이학수(61, 민) 전 전북도의원
김민영(66, 무) 전 정읍시립조합장
이상욱(61, 무) 법무부 귀환면접관

남원시장



최경식(56, 민) 당 정책위 부의장
강동원(69, 무) 전 국회의원
박중희(60, 무) 전 법사위 전문위원

김제시장



오철기(53, 무) 전북시민포럼공동대표
윤승호(68, 무) 전 남원시장
정성주(57, 민) 전 김제시의회 의장
김중희(56, 무) 전 국회의원

완주군수



신성욱(60, 무) 특장산업발전연구원장
유희태(68, 민) 당 정책위 부의장
국영석(69, 무) 고산농협 조합장
송지용(58, 무) 전 전북도의회 의장

진안군수



전춘성(61, 민) 진안군수
이한기(69, 무) 전 전북도의원
천춘진(51, 무) 한봉대 현장교수

무주군수



황의탁(65, 민) 전 전북도의원
서정호(63, 국) 전 청와대 행정관
황인홍(66, 무) 무주군수

장수군수



최훈식(55, 민) 동부권 특위 위원장
이춘열(66, 무)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장영수(64, 무) 장수군수

임실군수



한병락(68, 민) 전북도당 부위원장
박기봉(67, 무) 전 남원시 부시장

임실군수



박정근(49, 무) (유)일스타 대표이사
심민(74, 무) 임실군수

순창군수



최기환(62, 민) 전 순정축협 조합장
최영일(50, 무) 전 도의회 부의장

고창군수



심덕섭(59, 민) 전 국가보훈처 차장
유기상(65, 무) 고창군수

부안군수



이호근(56, 무) 전 전북도의원
권익현(61, 민) 부안군수
김성태(68, 국) 신타오양원 설립자
김성수(60, 무) 등록PC 대표이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info.nec.go.kr) 참고**

내일까지 지선 선거인명부 열람 · 이의신청 가능

열람시 지역 구·시·군청 방문, 홈페이지 활용... 20일 최종 확정
비용제한액 변경 공고 완료, 선거구역 변경 비용 제한액 재산정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리명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오는 20일에 최종 확정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지방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가 지난 11일 완료됐다

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을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구획정으로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변경된 도지사과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4억3,700만원으로 지난 1월 21일 공고된 금액보다 1억2,600만원 증가했다.

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 평균 1억

6,400만원, 지역구도의원선거 평균 5,300만원, 지역구시·군의원선거 평균 4,400만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 1억 4,600만원,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 평균 5,200만원으로 재산정·공고됐다.

한편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 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기준으로 연간 모금한금액이 재산정된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언론인 고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기자 A씨를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특정 예비후보자의 경력, 전과 등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해 인터넷 기사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2항은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취재·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

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통신·신문·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선거법외죄이며, 앞으로 이러한 행위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